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2019.09.01

제22조(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) 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생에 대하여 전공 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제23조(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)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전공시험은 본인이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.

③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.

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제24조(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) ①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 등을 발표한다.

②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5조(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)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.